주요국
관세·원산지 동향



관세정책, 통상집행, 공급망·환경규제 등 주요 이슈를
원산지·공급망 리스크 관점에서 선별하여 매월 제공합니다.
미국 동향은 직전 발간호 이후 신규 사안을 중심으로,
주요국 동향은 최근 발생한 이슈를 중심으로 반영합니다.

* 이번 호부터는 관세청이 발간한 '해외관세동향'과 통합하여 함께 제공함
* 밑줄 표시된 문구를 클릭하면 관련 원문 링크로 이동할 수 있음

2026
9월호

주요국	동향
미국	**CBP,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위한 수입정보 공개 강화 추진(9.2.)** • 행정명령 제14411호에 따라 외국 수출서류, 공급망 참여자·제품정보 및 추적기술 활용 등 수입정보 공개 강화방안 구체화 **CBP, EAPA를 통한 관세포탈 적발금액 사상 최대 달성(7.29.)** • EAPA 시행 이후 처음으로 단일 회계연도 관세포탈 적발액 10억 달러를 돌파 • 원재료와 제3국 가공 후 제품이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어 회피 결정(8.20.) **미 국제무역법원,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관세 소송 일정 공표(8.13.)** • 강제노동 무역법 제301조 관세에 대한 위법성 소송 사건관리 방안 발표
중국	**해관총서, 첨단기술 물품 선별검사의 운영성과 발표 (7.29.)** • 첨단기술 수입화물을 항만이 아닌 기업의 목적지·클린룸에서 검사하는 선별검사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통관시간·비용을 줄이고 데이터 기반 관리를 강화 **중국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활용 수출물류 동향 (7.28.)** •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통한 자동차·태양광·가전 등 교역이 확대되면서 운송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 효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대유럽 육상 물류망 활용이 확대
EU	**EU 집행위, 2025년 수입 위해물품 적발 연례 보고서 발간(7.20.)** • 2025년 EU 수입신고가 해외직구 증가로 급증한 가운데 58,391건이 위해물품으로 최종 통관불허되었으며, 중국산이 67.9%로 가장 많고 한국산은 3.86%로 4위를 기록
캐나다	**일부 미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발표(8.25.)** • 캐나다는 미국의 대캐나다 고율관세에 대응해 2026년 9월 8일부터 철강·유제품·가전·농업장비 등 일부 미국산 물품에 15%·25%·50%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기존 자동차 보복관세를 유지 **덤핑·보조금 조사 및 행정재심 확대 추세** • 캐나다는 2025년부터 행정재심을 연례 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규 덤핑·보조금 조사 및 한국산 동관 이음쇠·라인파이프·변압기 등에 대한 재심을 확대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활용 강화 추세
일본	**일본 기업, 중국 해관에서 불평등 대우 관련 불만 증가 (7.31.)** • 중국 진출 일본기업 조사에서 세관절차에서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32%로 상승하고, 이중용도품 규제와 장기 통관심사 등에 대한 불만이 확대

관세청 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

2026. 9. 30.

미국

① CBP,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위한 수입정보 공개 강화 추진(9.2.)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행정명령 제14411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일 공급망 가시성 강화를 위한 사전 규칙제정 공고(ANPRM)를 발표함. 행정명령 제14411호는 외국 수출자가 미국 수출 전 자국 세관에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서류·정보를 CBP에도 제출하도록 하는 요건을 90일 이내 마련하도록 지시함

▶ **(수출국 제출자료 확보방안 강구)** 미국 수입자(IOR)가 수출신고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원산지증명서, 수출허가·승인서, 선하증권·항공화물운송장 등 수출자가 자국 세관에 제출한 서류를 확보하여 수입신고 시 제출하도록 할지,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할지 등 구체적인 제출·보관 방식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또한 해당 자료를 미국 수입신고 자료와 비교하여 가격·수량·품목분류 등의 불일치나 이중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함

▶ **(공급망 참여자 식별정보 구체화 검토)** 기존의 제조자·선적인 식별코드(MID)만으로는 실제 공급망 참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제조자·선적인·수출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글로벌 사업자 식별정보(GBI)[1] 등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또한 모델·스타일 번호 등 제품 식별번호와 물품의 등급·크기 등 제품정보를 제출하는 방안도 의견수렴 대상으로 제시함

▶ **(ACE·공급망 추적기술 연계방안 모색)** AI 등 공급망 추적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환적 위험·공급망·생산 방법을 식별하고, 이를 미국 통관시스템인 ACE 및 관계기관(PGA)[2] 데이터와 연계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함. 또한 CTPAT[3] 참여기업의 공급망 추적기술 활용·CBP와의 정보공유 및 이에 따른 혜택 부여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함

▶ CBP는 이에 앞서 행정명령 제14411호의 초기 이행조치로 CBP Form 5106[4]에 등록된 IOR 식별정보의 정확성 검증 강화 방침을 마련하고, 9월 18일부터 실제 사업장 주소·이메일·전화번호 등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IOR 번호를 즉시 무효화한다고 발표함(8.19.)

▶ 행정명령 제14411호에 따라 IOR 관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외국 수출서류의 종류, 공급망·제품별 정보, 검증기술 등 수입정보 공개 강화와 관련된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 수렴에 착수함에 따라, 향후 미국 수출기업의 수출신고·원산지·공급망 자료 관리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임

[공급망 가시성 강화 관련 주요 의견수렴 사항]

구분	세부 분야	주요 질의사항
외국 수출서류 관련 정보	수출자 제공자료 제출·보관 방식	· 수출자 제공자료의 종류·대상 · 수출자 자료의 제출시기·방법 · 수출신고자료와 미국 수입신고자료 불일치 시 처리 방법
	국가안보 고려 여부	· 수입자에게 외국 수출 서류의 제출 요구 여부 · 고위험 수입품에 전수 또는 무작위 추가자료 제출 적용 여부
공급망 참여자 식별 관련 정보	공급망 참여자 식별범위	· 제조자·수출자·선적인의 추가정보 제출의무 여부 · 배송처,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으로 확대 여부
	식별정보·물품정보 추가 여부	· 공급망 참여자 추가 식별정보 요구 여부 · 물품 정보(모델·스타일 번호, 구성·크기·등급 등) 제출 여부
공급망 추적기술 활용 관련	새로운 추적기술 활용 가능성	· AI 등 공급망 추적기술로 리스크 식별 가능 여부 · 추적정보와 ACE·PGA 데이터 연계 여부
	CTPAT 요건·혜택 확대	· CTPAT 참여기업에 강화된 공급망 추적기술 사용 요구 여부 · 추적정보를 CBP와 공유하는 기업에 추가 혜택 제공 여부

1) Global Business Identifier. 법인·사업장 등 공급망 참여자를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해 민간에서 발행하는 글로벌 사업자 식별자

2) Partner Government Agency. ACE를 통해 수입·수출 관련 요건과 정보를 처리하는 미국 정부 관계기관

3) Customs 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 기업이 자발적으로 강화된 공급망 보안조치를 이행하는 대신 화물검사 축소·신속통관 등의 혜택을 받는 CBP의 민관협력 프로그램

4) 수입자 등의 식별정보를 CBP 시스템에 등록·변경하기 위한 서식

② CBP, EAPA를 통한 관세포탈 적발금액 사상 최대 달성 발표(7.29.)

CBP, "EAPA[5] 운영 이래 최초로 10억 달러(약 1조 4200억원) 이상의 관세 포탈 금액 적발" 발표

▶ **(EAPA 조사의 주요 특징)** 일반 세관 조사와 달리 ①임시 통관 보류 조치, ②해외 공장 현지 실사, ③1년 이내 신속한 조사 완료가 가능함

▶ **(2026년 주요 성과)** 총 14건의 최종 결정 통지서를 발송. 주요 품목은 태양전지, 견인식 잔디 관리기, 목재, 파이프, 잔탄검, 금속 로커, 목재 가구이며, 멕시코, 태국, 인도, 뉴질랜드, 영국 등 5개국에 대해 실사 검증함

▶ CBP 청장은 "CBP EAPA 프로그램은 미국 기업과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둔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지원하며, 반덤핑 및 상계관세 법안을 엄격히 집행함으로써 국내 산업을 위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힌바, 향후에도 EAPA를 통한 반덤핑관세·상계관세 회피 단속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EAPA 사건번호 8224(2026.8.20.) 주요 내용

항목	내용
조사 대상	중국산 구연산을 원료로 인도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입된 구연산나트륨 및 구연산칼륨 • 관련 조치: 중국산 구연산 및 특정 구연산염에 대한 반덤핑관세 명령(2009.5.29.)·상계관세 명령(2009.5.29.)
조사 배경	인도 생산업체가 2020~2025년 수입 구연산의 대부분(97%)을 중국에서 조달하였고, 중국산 구연산 수입량과 미국으로 수출한 구연산나트륨 물량이 밀접하게 대응되며, 과거 동 업체의 전신이 중국산 구연산을 인도산으로 신고한 사례가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중국산 물품을 Type 03(반덤핑·상계관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 관세를 회피하였다는 혐의가 제기됨
조사 결과	CBP 무역데이터와 정보요청서(RFI)·보충정보요청서(SRFI) 답변 등을 검토한 결과, 인도 생산업체 및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들이 중국으로부터 상당량의 구연산 및 구연산 나트륨을 수입하였고, 구연산 자체 생산을 위한 발효공장도 조사기간 종료 시점까지 건설 중이어서 생산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CBP 판단	수입업자는 중국산 구연산이 인도에서의 추가 가공을 거쳐 새로운 물질로 실질적으로 변형되었으므로 반덤핑·상계관세 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CBP는 중국산 구연산과 인도에서 생산된 구연산나트륨·구연산칼륨 등이 모두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산 구연산을 제3국에서 이들 제품으로 가공하더라도 명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므로 반덤핑·상계관세 회피를 인정함

▶ 중국산 원재료와 이를 가공하여 생산한 최종제품이 각각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제3국에서 가공이 이루어진 최종제품도 반덤핑·상계관세 명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재료뿐 아니라 가공 후 제품의 적용범위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음

5) Enforce and Protect Act(집행 및 보호법). 미국 수입업자가 반덤핑관세(AD)나 상계관세(CVD) 등 높은 징벌적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3국 우회 수입, 원산지 세탁, 저가 신고, 허위 품목 신고 등의 편법을 쓸 때, CBP가 신속히 조사하여 미납 관세 추징 및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하는 전담 법률(2016년 시행)

③ 국제무역법원,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관세 소송 일정 공표(8.13.)

▶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관세 무효 판결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 상품 수입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국가가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제도를 미비하게 운용하거나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10%~12.5%의 무역법 제301조 관세를 부과함. 이에 캘리포니아, 뉴욕 등 25개 주 정부와 민간 수입업체 연합이 동 조치의 위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원고 측[6] 입장)** USTR의 조치가 강제노동 근절이라는 목적 대신, 대법원에서 기각된 기존 IEEPA 및 무역법 제122조 관세를 동일한 수준으로 재도입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 각국의 법제 및 집행 실태 차이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세율(10%~12.5%)을 부과한 것은 무역법 제301조의 합리적 권한을 남용한 불법 조치라는 점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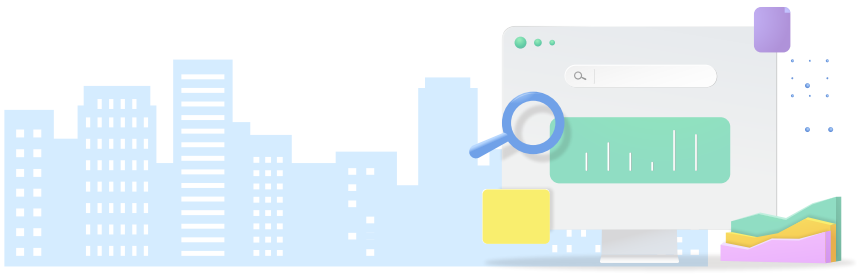
□ CIT 재판부의 사건 관리 방안(Procedural Order No. 26-01)

▶ **(마스터 케이스 운영)** 중복 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 사건(Master Case 26-cv-03555-3JP)을 개설하여 공통 서면 및 명령을 일괄 관리함

▶ **(원고 운영 위원회 및 표본 사건 지정)** 효율적 조율을 위해 원고 측 변호인단 중 소규모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여 법원과의 절차 협의 및 통합 서면 제출을 전담하게 하고, 제기된 사건 중 대표성이 있는 1건을 '표본 사건(Sample Case)'으로 지정하여 우선 심리함. 표본 사건으로 지정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들은 심리가 정지되며, 비지정 원고들은 법정 조언자(Amicus Curiae) 자격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정부 측 송달 및 답변)** 미국 법무부 국제무역현장사무소 책임변호사가 대통령, USTR, CBP 등 모든 정부 측 피고를 대리하여 송달을 수락하며, 8월 24일까지 마스터 케이스에 공통 답변서(Generic Answer)를 제출함

▶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제301조 관세의 적법성이 국제무역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투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해당 관세의 지속 여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소송 진행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6) 25개 주 정부(민주당 소속 관계자들) 및 2개 소규모 수입업체 연합

중국

① 해관총서, 첨단기술 물품에 대한 선별검사의 기업지원 성과 발표 (7.29.)

▶ 해관총서는 첨단기술산업 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2월부터 국경간 무역 편의화 특별행동의 일환으로 진공포장, 빛·먼지 차단, 항온 보관 등이 필수적인 첨단기술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모델을 시행하고 있음

□ 선별검사의 목적 및 특징

▶ 선별검사는 기존에 위험 평가를 통과한 **첨단기술 화물을 대상으로 항만에서 검사하는 대신 해관직원이 목적지 기업의 무진실(clean room)에서 검사**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로, 항만 내 일반 환경에서 포장을 개봉하여 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성능 저하 및 품질 악화**, 기업의 물류 차질과 비용 증가, 산업 체인 및 공급망의 마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됨

- 장삼각(长三角)[7] 일체화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3.5 전국으로 대상을 확대, '24.11 기업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장삼각 지역 제한을 철폐하고 운송수단을 해상·항공에서 철도까지로 확대함
- 5년여에 걸친 기간 동안 전국 551개 첨단기술 기업에 혜택을 주었으며, 6만 8천여 개의 첨단기술 상품이 신고되었고, 통관 편의 혜택을 받은 신고서는 2,851건, 화물 가치는 321억 위안에 달함

▶ **(시간 비용 절감)** 3~4일이 소요되던 항만 작업 시간을 항만에서 즉시 통관을 실현함으로써 최단 시간 기준 당일 처리로 단축하여 통관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 컨테이너 개봉 검사로 인한 화물 인도 지연 및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기업의 2차 진공 포장, 부두 창고 보관, 화물 재발송 등 통관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

- 상하이 세관은 혁신적인 등록 전용 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이 '신고 즉시 심사, 즉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항만 신속 통관'에서 '관할 지역 유연한 검사'로 전환하여 '검사장을 벗어나자마자 생산 라인에 투입'되는 원활한 연계 체계를 실현함

▶ **(데이터 기반 행정)** 빅데이터 모니터링 모델을 도입해 등록 기업에 대해 정기적으로 전방위적이고 다차원적인 프로파일링을 실시함으로써 '인력 투입 방식'에서 '데이터 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을 실현

- 진공 포장 등의 방법이 사용된 첨단기술 화물에 대한 통제·검사를 위한 스마트 사전 등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자신고, 종이 없는 1차 심사, 지능형 평가 등 전 과정에 걸친 편리한 사전 등록 모델을 활용해 사전 등록 처리 속도를 50% 향상

▶ **(예외 인정)** 실수 허용 정책을 적시에 최적화·조정하여, 고의성이 없거나 기업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인해 세관의 적발 조치를 받았으나 위반 횟수가 적은 첨단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선별검사 모델을 적용

▶ 포털 사이트, 세관장 직접 방문 설명 등 온라인·오프라인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지방 정부의 평가·추천 메커니즘 구축을 추진하는 등 혜택 대상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첨단기술 화물에 대한 선별검사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7) 상하이 해관을 중심으로 장쑤성, 저장성, 안후이성 관내 해관

② 중국의 중국-유럽 화물열차 활용 수출물류 동향 (7.28.)

▶ 최근 중국-유럽 화물열차(China-Europe Railway Express)[8]를 통한 중국 제품의 유럽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6월까지 누적 운행 횟수는 13만 회, 누적 운송 화물 가치는 5,200억 달러를 초과함

□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對유럽 수출입 특징

▶ **(중국산 에어컨)** 유럽 사상 최고 수준의 폭염으로 최고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에어컨 냉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지에서 에어컨이 공급 부족 현상을 보이자, 중국 에어컨 제조업체들은 기존의 해운 물류 방식에 더해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통해 유럽 운송을 진행함. 운송 기간이 약 40일에서 약 15일로 단축되고, 중국-유럽 간 '고속 물류망'이 구축됨

▶ **(양방향 구매 창구)** 중국 소비자는 스페인산 와인, 네덜란드산 치즈 등 유럽 상품을 직접 구매하고, 유럽 소비자는 중국산 스마트 가전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게 됨

▶ **(자동차)** 2026년 초 40피트 **자동차 전용 컨테이너**가 새롭게 투입되었으며, 기존 일반 컨테이너보다 1대 더 많은 자동차 적재 가능

▶ **(태양광 제품)** 중국-유럽 화물열차 이용 시, **15일 만에 유럽 도착**이 가능. 이는 해상운송보다 20일 이상 운송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자금 회전율은 30% 향상됨

▶ **(목재)** 장시성 간저우의 목재 수입기업이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활용하여 유럽산 목재를 수입하여 운송기간은 해상운송보다 약 70% 단축되었으며, 종합 물류비용은 18% 절감됨

▶ **(잡화·철물제품)** '화물열차+산업' 모델을 확대하여 중국 제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 맞춤형 전용 화물열차, 잡화, 철물제품 등 특화 전용열차를 운영함

▶ **(동남아 열대 과일)** '중국-라오스 철도+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통해 두리안, 망고스틴 등 동남아시아의 열대과일을 빠르게 유럽으로 보내어 중국과 유럽 소비자에게 물류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 제공

▶ 중국-유럽 화물열차의 주요 운행지역 중 하나인 산둥성에 위치한 기업들은 이를 이용해 대유럽 운송 기간 단축과 물류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해상운송을 보완하는 수출물류 수단**으로 중국-유럽 화물열차 활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8)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국제 컨테이너 화물열차로, 중국 일대일로 핵심 육상 물류망
아시아와 유럽, 동서 지역을 연결하고, 생산과 소비를 효과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연선국가 간 상품 유통과 산업 상호보완을 크게 촉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송 화물은 53개 대분류, 5만여 개 품목에 이르고 있음

EU(유럽연합)

① EU 집행위, 2025년 수입 위해물품 적발 연례 보고서 발간(7.20.)

▶ EU 집행위 조세관세총국(DG TAXUD)이 최근 EU 27개 회원국 세관의 수입 단속 실적을 담아 2025년 수입 위해물품 적발 연례 보고서(Report on controls on products entering the EU market) 발간함

▶ **(2단계 단속체계)** 각국 세관은 EU 반입단계에서 제3국산 물품의 안전성 및 위해 여부에 대한 1차 통제(우범화물 선별에 기반한 서류심사, 물품검사, 정밀검사)를 수행하며, 금지·제한조치(P&R) 위반이 의심되는 물품은 요건확인기관인 각국 시장감시당국(MSA)[9]에 이관함

- 세관의 통관보류 통보 후 시장감시당국은 4영업일 내 ①보류연장 요청, ②적합 확인 및 통관 승인, ③위해물품 확정 중 하나를 결정하여야 하며, 기한 내 응답하지 않은 경우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한 해당 물품은 자동 통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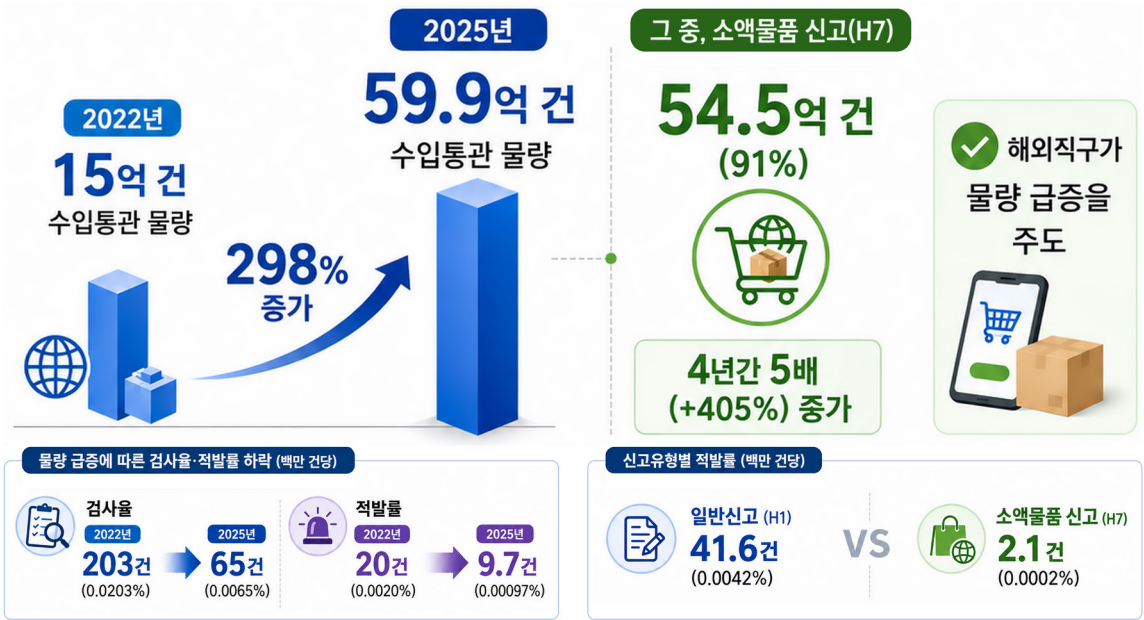
▶ **(2025년 주요 단속통계)** 27개 회원국 세관은 수입신고 물품에 대해 총 387,588건의 검사(서류심사, 물품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위해 의심 205,888건(53%)을 통관보류하고 시장감시당국에 통보함. 시장감시당국 판정 결과 최종 58,391건(보류의 28%)이 위해물품으로 확정되어 통관불허 처리되어, 전년(64,322건) 대비 소폭 감소함

- 2025년 수입통관 물량은 총 59.9억 건으로 2022년(15억 건) 대비 298% 증가하였으며, 이 중 소액물품 신고(H7)가 54.5억 건(91%)으로 4년간 5배(+405%) 증가하는 등 해외직구가 물량 급증을 주도

- 물량 급증에 따라 백만 건당 검사율은 203건(0.0203%, '22년)에서 65건(0.0065%, '25년)으로, 적발률은 20건(0.002%)에서 9.7건(0.00097%)으로 하락하였으며, 집행위는 이를 역내 공정경쟁 환경과 소비자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심각한 우려 요인으로 규정함

- 집행위 분석에 따르면, 수입 물량이 급증할 경우 한정된 검사자원이 분산되어 적발률이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

- 신고유형별로 적발률은 일반신고(H1)가 백만 건당 41.6건(0.0042%)인 반면 소액물품(H7)은 2.1건(0.0002%)



9) 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품목 전문성을 갖춘 판정기관으로서, 세관이 통보한 의심 물품의 안전성 및 위해 여부를 최종 판정할 책임을 짐

▶ **(회원국 간 성과 격차)** 최고-최저 성과국 간 적발률 격차는 384배(2024년 1,883배)에 달하며, 오스트리아(백만 건당 194.3건, 0.019%),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사이프러스 4개국은 EU 평균(9.7건, 0.00097%)의 10배 이상을 기록. 벨기에는 백만 건당 3.7건(0.00037%)으로 EU 평균 하회 그룹에 포함

▶ **(저성과국 관리조치)** 집행위는 2024년 저성과 3개국(네덜란드, 덴마크, 헝가리)에 대해 행정서한을 발송하고 국가실행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26년 1분기 기준 네덜란드(0.1→13.2건)와 덴마크(0.7→14.5건)는 EU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크게 개선된 반면, 헝가리는 0.3→1.5건으로 소폭 상승

▶ **(통관불허 품목 다수 반송 또는 폐기 처리)** 통관불허 물품 중 93%는 보수작업 후 통관이 아닌 반송이나 폐기로 처리됨

- (신고유형) 건수 기준으로 우편물(H6)은 9,455건에서 23,770건으로, 소액물품(H7)은 5,216건에서 11,457건으로 각각 2.5배와 2.2배 증가한 반면, 일반신고(H1)는 49,106건에서 22,453건으로 감소
- (주요 원산지) 중국이 67.90%로 압도적 1위를 유지한 가운데 영국(6.07%)과 미국(5.38%)에 이어 한국(3.86%)(4위)과 홍콩(3.25%)이 주요 원산국으로 재진입
- (주요 품목) 건강(Health) 카테고리(의료기기, 화장품 등)가 27,338건으로 4년 연속 1위이며, 전자 및 기술(휴대폰, 컴퓨터 등) 11,773건과 가정 및 생활(생활가전, 조명 등) 9,237건이 뒤를 이음

▶ EU에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통관불허 물품의 대부분이 재수출·폐기 대상이 되는 만큼, 통관보류·불허를 예방하기 위해 품목별 규제요건 및 관련 증빙·표시사항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캐나다

① 미국산 일부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발표(8.25.)

▶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8월 22일부터 약 276억 캐나다달러(약 200억 달러) 상당의 캐나다산 물품에 50% 관세를 부과한 데 대응하여, 미국 관세로 피해를 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산 제품과의 경쟁 여건을 개선하고자 미국의 관세와 **동일한 규모(dollar-for-dollar)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신규 보복관세는 미국의 관세법 제338조 및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세 대상품목 중 **철강, 유제품, 가전제품, 농업장비, 펄프·제지, 전자제품 등**을 중심으로 부과되며, 품목별 관세율은 미국이 캐나다산 물품에 적용하는 관세율에 상응하도록 설정함

▶ (시기) **2026년 9월 8일 오전 12시 1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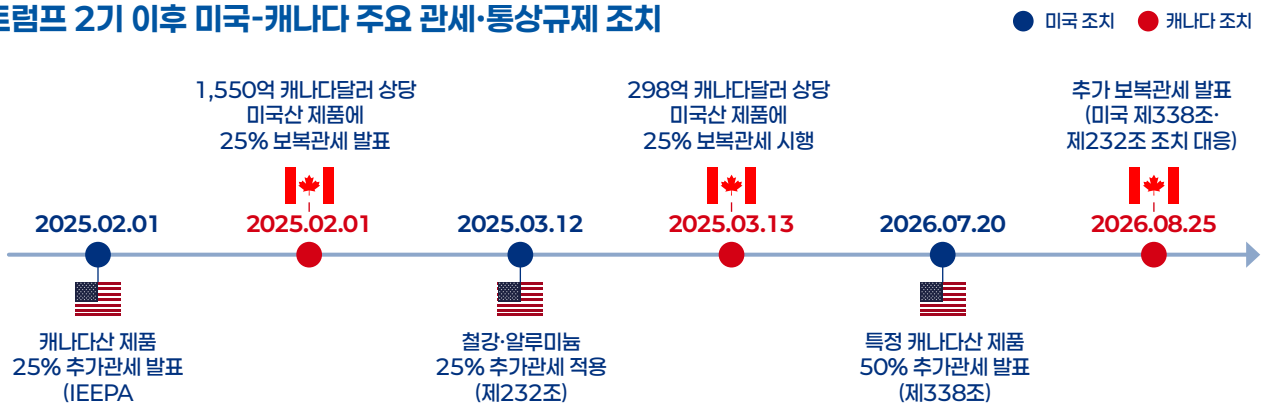
▶ (방식) 미국 관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품목을 중심으로 **15%·25%·50% 관세 부과**

관세율	주요 적용물품(캐나다 세번)
15%	금속 인발·압출용 다이스 및 프레스·스탬핑 공구(8207.20.00, 8207.30.00), 지게차(8427.10.10 등), 산업용 로봇·일부 하역기계(8428.70.00, 8428.90.00), 일부 농업용 기계·부품(8433.20.00 등)
25%	치즈(0406.10.10. 등), 일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7320.10.00, 7615.10.00 등), 냉장고·냉동고(8418.21.00 등), 세탁기·건조기(8450.11.10. 등), 식기세척기 부품(8422.90.20 등)
50%	철강·알루미늄 제품(7206.10.00, 7301.10.00, 7601.10.00 등), 우유 등 일부 유제품(0402.10.10. 등), 합판·종이제품(4402.90.10, 4819.10.00 등), 가구(9403.20.00 등), 의류(6104.43.00 등)

▶ 기존에 25%가 적용되던 일부 철강·알루미늄 제품의 관세율이 50%로 인상되며, 가구·의류에도 50%가 적용됨.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의 기존 보복관세도 유지됨

▶ USMCA 원산지표시 규정상 미국산으로 표시될 수 있는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미국산인지에 대한 원산지 판단이 요구되며, 향후 미국과의 통상관계에 따라 대상 품목 및 세율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트럼프 2기 이후 미국-캐나다 주요 관세·통상규제 조치



② 덤핑·보조금 조사 및 행정재심 확대 추세[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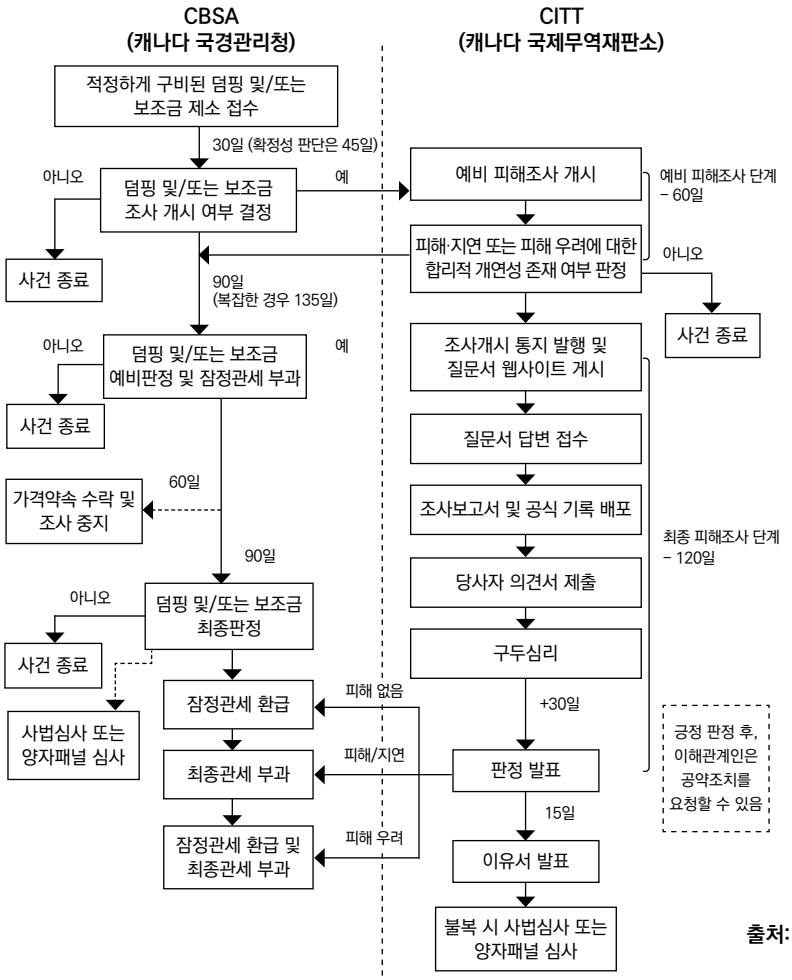
▶ 「특별수입조치법(SIMA)」에 따라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수입물품의 덤핑·보조금 여부를 조사하고,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ITT)는 해당 수입으로 인한 캐나다 산업의 피해 여부를 심사하며, 양 기관의 최종 긍정판정이 있는 경우 반덤핑·상계관세가 부과됨. 이후 CBSA는 필요시 행정재심을 통해 정상가격·수출가격·보조금액 등을 재산정함[11]

▶ **(덤핑·보조금 조사 현황)** CBSA는 중국산 판지컵·용기(8.17.), 트럭·버스용 타이어(8.31.) 등 2026년 들어 9월 초까지 8개 품목에 대한 신규 덤핑·보조금 조사를 개시함. 2025년에도 9개 품목에 대한 신규 조사를 개시하는 등 최근 무역구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한국산 물품에 대한 행정재심)** CBSA는 6월 1일 중국·한국·미국산 동관 이음쇠의 정상가격·수출가격을 재산정하기 위한 행정재심을 개시했고, 6월 26일 한국산 탄소·합금강 라인파이프에 대해 3개사를 대상으로 정상가격·수출가격 행정재심을 개시함. 한편 8월 14일 종료된 행정재심을 통해 새로 결정된 한국산 소형·대형 전력변압기에 대한 정상가격·수출가격은 종료일 이후 통관되는 대상물품부터 적용됨

▶ 미국의 고율 관세로 제3국산 물품의 캐나다 시장 유입 위험이 확대되는 가운데, CBSA는 2025년부터 행정재심 정책을 수시 검토 방식에서 연례 검토 방식으로 전환하여 정상가격·수출가격·보조금액 관리를 강화함. 향후 덤핑·보조금 조사 및 행정재심 등 캐나다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캐나다 덤핑·보조금 조사 절차]



출처: CITT, Preliminary and Final Injury Inquiry Guidelines

10) CBSA 및 CITT 덤핑·보조금 조사 현황 참고

11) CBSA 행정재심은 기존 정상가격·수출가격·보조금액을 현재 시장상황에 맞게 갱신하거나 신규 수출자·모델에 적용할 값을 설정하기 위한 절차임

일본

① 일본 기업, 중국 해관에서 불평등 대우 관련 불만 증가 (7.31.)

▶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으로 구성된 '중국일본상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중국 기업과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분야로 '세관 절차'라고 답한 비율이 32%로 반년 전 조사보다 8%P 증가하여 중국 당국에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급증함

- 설문조사는 7.1~17. 실시되었고, 중국에서 사업하는 일본 기업 약 8,000개 중 1,364개가 응답함
- 지난 조사는 중국 정부가 대일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한 1월에 실시됐으며, 금번 조사에서 일-중 관계 악화가 일본 기업의 실무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 반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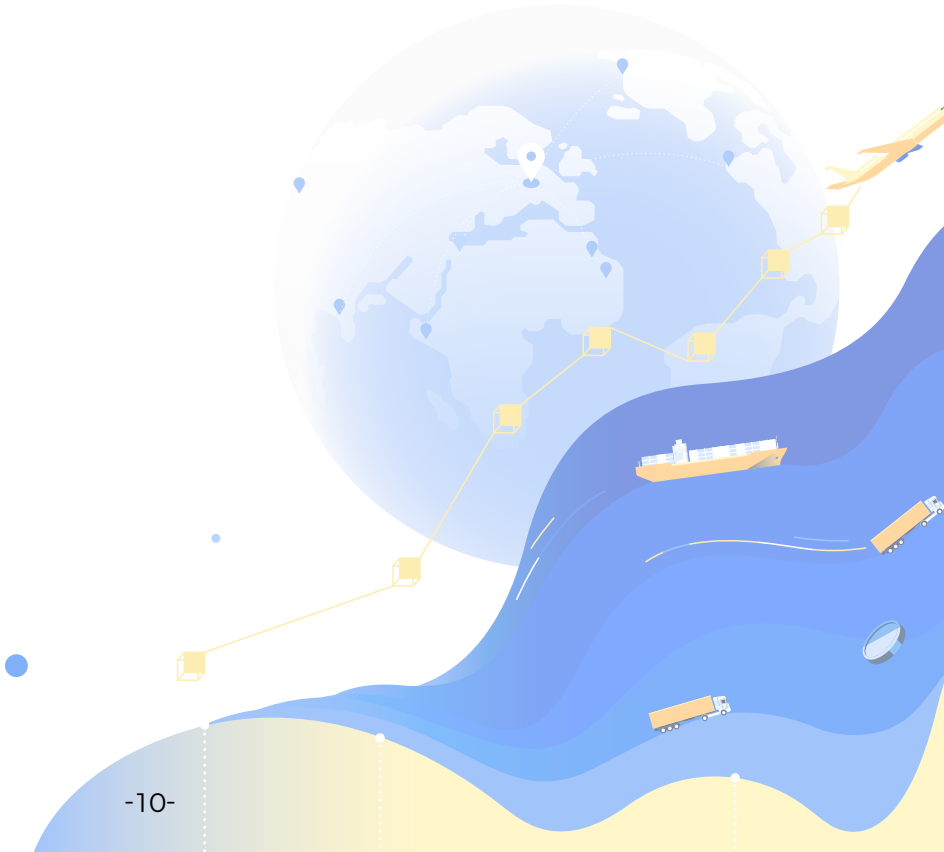
▶ **군민 양용(이중 용도)품의 수출 규제가 엄격**해졌다는 의견, 일반 화물의 세관 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의견, 전자 부품과 화학품 등이 엄격한 심사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집계됨

▶ 경영 과제에 대한 설문에는 **일-중 관계 악화**를 염두에 두고 '국제 정세의 영향'이라고 답한 비율이 이전 조사보다 4%P 상승하여 53%가 되었음

▶ '26년 1~6월의 매출액이 전년도 하반기('25.7~12)에 비해 '상승', '약간 상승'이라고 답한 기업은 32%로, 지난 조사보다 3%P 감소하며 **일본 기업의 중국 사업 수익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됨

▶ 일본 기업 파나소닉홀딩스 고문 혼마 데쓰로 회장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세관 절차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악화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대중 투자에 대해서도 '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시, 많은 일본 기업이 투자 판단을 재검토하게 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명함

▶ 중국 세관절차에서 중국 기업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일본계 기업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통관 애로에는 일-중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임



2026년 미국의 관세부과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2]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	무역법 제301조 강제노동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무역법 제301조[3]		기본관세 자유무역협정 (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1]	한국·유럽연합(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25~100% (전기차)				
	캐나다·멕시코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충족	① 완성차 조건 : 상무부 승인 대상 : 비미국산부품만 25% ②자동차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부품만 25% ②자동차부품 0%							
	캐나다·멕시코 / USMCA 미충족	25%		25%							
철강·알루미늄·구리 중심 (부속서 1-A)	중국	50%		50%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25%		25%							
	그 외 국가	50%		50%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중심 (부속서 1-B)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15%		15%							
	그 외 국가	25%		25%							
고정식 산업기계·전력망 장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3)[4]	중국	15%		15%	품목별 관세	+	7.5% or 25%	+	기본세율 또는 FTA 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러시아·벨라루스·쿠바·북한	25%		25%							
	그 외 국가	15%		15%							
이동식 산업기계·농기계 등 일부 제품 (부속서 1-C)[5]	한국·EU·일본 등	15%		15%	품목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25%			25%				
반도체 및 파생상품[6]	중국	25%		25%	품목별 관세	+	25%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그 외 국가										
무인항공기 시스템(UAS) 및 부품	한국·EU·일본 등[7]	15%		25%	품목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영국	10%		25%							
	중국	25%/100%		25%/100%			25%				
	그 외 국가[8]	25%/100%		25%/100%							
그 외 제품[9]	한국·일본[10]		12.5%	12.5%	국가별 관세	+		+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or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2.5%	12.5%			7.5%~100%				
	EU		10%	10%							
	캐나다·멕시코 / USMCA 충족			0%							
	캐나다·멕시코 / USMCA 미충족		10%	10%							

1) 한국은 EU · 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기본세율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버스 및 기타 차량 (제8702호: 운전자 포함 10명 이상 수송할 수 있는 차량, 미국 주석 38(c) 열거품목)에는10%가 적용되고,
중대형차량(제8701·8704·8705·8706·8709호, 미국주석 38(b) 열거 품목)에는25%가 적용됨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부과가 되지 않음. 단, 제301조와 기본관세/FTA 및 제301조와 반덤핑·상계관세는 중복 부과 가능

3) 미국은「무역법」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제품(25%), 광물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4) 포고령 제11021호(제11032호에서 적용 대상 품목 일부 추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단, 러시아산 알루미늄 200% 관세는 계속 적용됨

5) 포고령 제11032호. 2026년 6월 8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됨

6) 포고령 제11002호. 제8471.50호·제8471.80호·제8473.30호에 해당하더라도 기술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반도체에만 적용됨

7) 제232조 관세와 합하여 15%가 되도록 적용됨

8) 포고령 제11055호. 부속서 1 해당 시 100%, 부속서 2·3 해당 시 25% 적용됨

9) 의약품의 경우 포고령 제11020호 부속서 3의 회사에는 7월 31일 이후, 그 외는 9월 29일 이후 100%, 한국은 협정에 따라 15%가 적용될 예정임
목재 및 파생상품의 경우 한국·EU·일본은 10% 또는 15%, 그 외는10% 또는 25%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품목은 아래와 같음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연목		10%	10%	무역협정 완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가구	목재가구	25%	30%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대해 12월 4일 이후 15%가 적용될 예정임

10) MFN 세율이 12.5% 이상이면 MFN 세율만 적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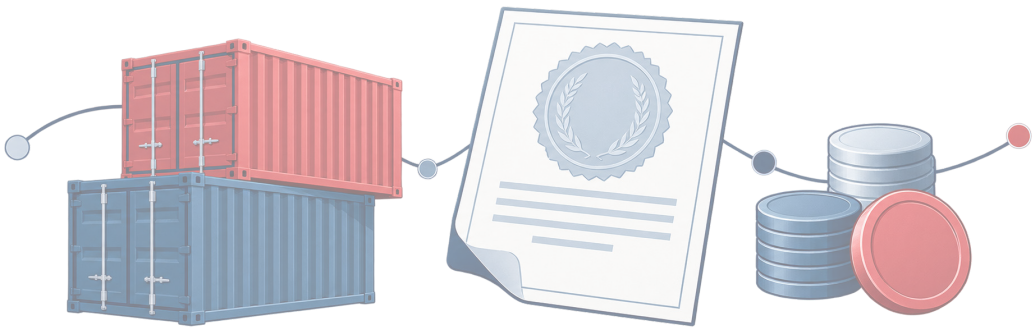
부록 2 2026년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 타임라인

작성일: 2026.09.15.

날짜	내용	출처
1.14.	• 1월 15일부터 부속서에 명시된 기술요건 충족하는 반도체 및 파생 제품에 25% 관세 부과 • 미국 내 데이터 센터에서의 사용·연구개발 등 제외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그 파생제품의 미국 수입 조정 백악관
1.29.	• 쿠바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석유를 공급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절차 마련	쿠바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 이란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승인	이란 정부의 대미 위협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백악관
2.6.	•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중단 이행 등을 이유로 인도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25% 추가 관세 철폐	러시아 연방 정부의 대미 위협 대응을 위한 미국의 관세 조정 백악관
2.6.	•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에 18% 상호관세율 적용, 인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인하 등 잠정 합의	미국-인도 공동 성명 백악관
2.9.	• 미국은 방글라데시산 제품에 19% 상호관세율 적용, 방글라데시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시장접근 확대 등 합의	미국-방글라데시 상호 무역 협정에 대한 공동성명 백악관
2.12.	• 미국은 북마케도니아산 상품에 15% 상호관세율 유지, 북마케도니아는 미국산 공산품·농식품 관세 철폐 등 합의	미국-북마케도니아 간 상호적이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무역 협정의 틀에 관한 공동 성명 백악관
2.19.	• 미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19% 상호관세율 유지, 인도네시아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무역장벽 완화 합의	미국-인도네시아 무역 협정 최종 확정 백악관
2.20.	• 대법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하여 부과한 상호관세·마약관세 등이 위임 권한을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결	Learning Resources, Inc., et al. v. Trump,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t al. (No. 24-1287) 미국 연방대법원
2.20.	• 대법원 판결에 따라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을 발령	특정 관세 조치 종료 백악관
2.20.	• 무역법 제122조에 근거해 2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150일간 모든 수입품에 10%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국제수지 문제 대응을 위한 임시 수입 추가세 부과 백악관
2.20.	• 소액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중단 조치 지속	모든 국가에 대한 소액 면세(de minimis) 적용 중단 지속 백악관
3.4.	•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정산 및 미확정 정산 건에 대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정산·재정산하도록 명령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5.	• 미국 24개 주는 무역법 제122조의 국제수지 적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임시 수입 추가세의 무효 확인 및 집행 금지를 청구	State of Oregon et al. v. Trump et al. (No. 26-01472) 미국 국제무역법원
3.6.	• 국제무역법원(CIT)은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즉시 이행 불가 진술을 근거로 IEEPA 관세 환급 명령의 즉시 이행 부분을 유예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3.11.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부문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설비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관련 특정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등 60개 경제권의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부과 및 집행 관련 조치·정책·관행에 대해 제301조 조사 개시를 공고	제301조 조사 개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도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다양한 경제권의 조치·정책·관행 연방관보
3.12.	•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해 개발 중인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의 개발 진척도를 항목별 40~80% 수준으로 보고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2.	• 특허 의약품 및 관련 원료에 100% 관세 적용 발표, 한국은 한-미 합의에 따라 15% 적용 예정 • 국내생산 이전 승인 기업, 제네릭 의약품 등 감면·예외 가능	미국으로의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 조정 백악관
4.2.	• 4월 6일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금속 함량 비율이 아닌 수입품 전체 과세가격 기준으로 50%, 25%, 15% 차등 관세율 적용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강철, 구리 수입 조정 조치 강화 백악관
4.6.	• IEEPA 관세 환급 대표 사건인 Atmus Filtration 사건에서 원고의 소송 취하에 따라 소송 종료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No. 26-01259) 미국 국제무역법원
4.13.	• CBP는 4월 20일 ACE 내 환급처리시스템(CAPE)을 배포하고, 수입업자·통관대리인의 환급 신청 시 관세 차액과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공지	CSMS #68340863 –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CAPE 기능 배포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6.	• USTR은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제301조 관세 조치에 대한 두 번째 4년 주기 검토를 개시	제2차 4년 주기 검토 개시: 중국의 기술 이전·지식재산권·혁신 관련 법·정책·관행 미국 무역대표부
5.6.	• CBP는 제232조 알루미늄·철강·구리 관세 관련 무관세 코드 신설 등 기술적 수정 사항을 공지	CSMS #68554727 – 알루미늄, 철강 및 구리 수입에 대한 제232조 관세 기술적 수정 안내 관세국경보호청
5.27.	• CBP는 대만산 자동차부품, 목재제품 및 민간항공기 부품에 대한 제232조 관세 조정과 관련해 통관 신고 지침을 공지	CSMS #68762890 – 미-대만 무역안보협정 관련 관세 조정사항 이행 지침 관세국경보호청
6.1.	•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동식 산업장비·농기계 등 일부 제품의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 임시 감면	미국으로의 알루미늄, 철강, 구리 수입에 대한 관세 체계 추가 조정 백악관
6.3.	• 수입신고인(IOR) 자격·보증·식별정보 요건 강화, 공급망·제품정보 제출의무 및 우선 단속 대상 정비	세관 집행 강화 백악관
6.3.	•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의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제도 도입·집행 미흡이 불합리하며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단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도입 및 효과적 집행 실패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사보고서 미국 무역대표부
6.15.	• 상고허가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중국산 List 3·4A 품목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확대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한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 유지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No. 25-1012) 미국 연방대법원
6.18.	• USTR은 독일의 의약품 가격정책이 미국에 과도한 글로벌 연구개발비 부담을 초래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제301조 조사를 개시	USTR, 독일의 혁신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과소지불 관련 301조 조사 개시 발표 미국 무역대표부
6.25.	• 미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일부 관세 인하·철폐와 투자협력 확대를 포함한 초기 무역합의에 도달하고 상호무역·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	미국과 우즈베키스탄, 무역협상의 조기 성과를 발표하고 상호무역·투자협정 협상을 가속화 미국 무역대표부
6.29.	• 미국은 비료 공급 부족에 대응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 최대 8개월간 관세 및 추정관세 예치금 징수를 면제	비상사태 선포 및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의 한시적 무관세 수입 승인 백악관
7.9.	• 미국은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관련 부품에 즉시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교역상대국과 협상한 뒤 180일 이내 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지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업용 항공기·제트엔진 및 항공기·엔진 부품의 수입 조정 백악관
7.15.	• 미국은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브라질산 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특혜관세 등 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치 연방관보

7.20.	• 미국은 캐나다의 미국산 자동차·주류·유제품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이유로 관세법 제338조에 근거하여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추가관세 부과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산 수입품에 추가관세 부과 백악관
7.20.	•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시설을 신설·증설·개보수하는 기업에 대해, 승인된 온쇼어링 계획 이행 시 일정 규모의 1차 알루미늄 수입물량에 제232조 관세율의 50%를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 도입	미국의 알루미늄 수입 조정조치 추가 강화 백악관
7.23.	• 미국은 2026년 7월 24일부터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미비·집행 부족을 이유로 60개 경제권에 대해 10% 또는 12.5% 관세를 부과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조치 도입 및 효과적 집행 실패와 관련한 각국의 조치·정책·관행에 대한 무역법 제301조 조치 백악관
7.31.	• 석영 표면제품(QSP) 산업의 심각한 피해에 대응해 2026년 8월 15일부터 4년간 관세할당제(TRQ) 형태의 세이프가드를 시행	석영 표면제품 수입 경쟁에 대한 긍정적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백악관
8.6.	• 미국은 2026년 12월 4일부터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최저수입가격(MIP) 적용하고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	미국으로의 폴리실리콘 및 그 파생제품의 수입 조정 연방관보
8.13.	• 미국은 2026년 9월 3일부터 특정 무인항공기 및 핵심 부품에 100%, 소형 무인항공기에 25%의 제232조 관세를 부과	미국으로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및 무인항공기 부품 수입 조정 연방관보
8.18.	• 캐나다산 주류, 유제품, 자동차에 대한 관세법 제338조 50% 관세 시행일을 8월 22일로 3일 유예	캐나다산 주류·유제품·자동차 추가관세 일시 중단 백악관
9.8.	• 일부 캐나다산 주류·유제품 수입 금지 및 기존 추가관세 대상 품목 조정	트럼프 대통령, 캐나다의 보복조치에 대응 백악관
9.16.	• 캐나다산 물품을 미국 연방 민간조달 체계에서 제외하거나 구매 불가 품목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추진하도록 지시	트럼프 대통령, 정부 조달 분야의 상호주의 원칙 복원 백악관



부록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타임라인

작성일: 2026.09.15.

규정

날짜	문서명	주요 내용
2023.5.10.	REGULATION (EU) 2023/956	CBAM 적용 대상, 보고 의무, 인증서 및 전환·확정기간 등 기본 운영체계를 규정. 5.16. 관보 게재, 5.17. 발효
2025.10.8.	REGULATION (EU) 2025/2083	연간 50톤 단일 중량 기준을 도입하고 신고·인증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CBAM 집행·관리체계를 강화
2025.10.20.	REGULATION (EU) 2023/956	Regulation (EU) 2025/2083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CBAM 기본규정의 통합본

이행규정

날짜	문서명	주요 내용
2023.8.1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전환기간(2023.10.~2025.12.) 중 분기별 CBAM 보고의무 및 내재배출량 산정·보고방법을 규정
2024.12.1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CBAM Registry의 구성·기능과 신고인·사업자 등의 접근권한, 신청·신고·검증정보 관리 및 정보교환 절차를 규정
2025.3.1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486	승인 CBAM 신고인 지위의 신청·심사·승인 및 취소 등 관련 요건과 절차를 규정
2025.10.31.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210	회원국의 대륙붕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반입되는 CBAM 상품 및 가공제품에 대한 신고·통제 절차를 규정
2025.12.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6	실제 내재배출량에 대한 검증원칙, 현장방문, 중요성 기준 및 검증보고서 작성 등 검증절차를 규정
2025.12.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7	확정기간의 상품별 내재배출량 산정을 위한 시스템 경계, 생산공정·전구물질 및 배출량 산정방법을 규정
2025.12.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8	EU ETS 경매가격을 기초로 하는 CBAM 인증서 가격의 산정 및 공표방법을 규정
2025.12.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49	Regulation (EU) 2025/2083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승인 CBAM 신고인 관련 이행규정(2025/486)을 개정·정정
2025.12.1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550	CBAM 간소화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CBAM Registry 관련 규정을 개정·정정
2025.12.1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19	세관당국이 수입신고 시 확보한 CBAM 관련 정보를 집행위원회에 전달하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
2025.12.1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0	EU ETS 무상할당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할 CBAM 인증서 수를 조정하는 방법 및 CBAM 벤치마크를 규정
2025.12.16.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실제 배출량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품목·국가·생산경로별 직접·간접 내재배출량 기본값(Default Values)을 규정
2026.7.20.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740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2621 부속서 I 및 IV의 CBAM 기본값 관련 오류를 정정

위임규정

날짜	문서명	주요 내용
2025.11.20.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5/2551	CBAM 검증기관의 인정 요건, 인정기관의 감독·통제, 인정 취소 및 인정기관 간 상호인정·동료평가 절차를 규정

지침서

날짜	문서명	주요 내용
2024.5.30.	EU 상품 수입업자를 위한 CBAM 시행 가이드	EU 수입자를 대상으로 전환기간 CBAM 적용범위, 보고의무, 내재배출량 산정 및 생산자로부터의 정보수집 등 이행 전반을 안내
2026.8.14.	EU 외 시설 운영자를 위한 CBAM 도입 가이드	비EU 생산자를 대상으로 확정기간 CBAM 기본개념·내재배출량 산정·무상할당 조정 및 6개 부문별 생산공정·산정사례 등을 안내
2026.8.24.	검증자 및 국가 인정 기관을 위한 CBAM 검증 및 인증 가이드	검증기관 및 국가인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재배출량 검증과 검증기관의 인정·감독 등 확정기간 검증·인정 절차를 안내

2026
09

해외 주요국 수입통관 불허·부적합 동향



조사일 기준 국가별 최신 통관불허 사례·통계, 비관세장벽 규제사항, 통관환경 변화 등을 조사·수록하였으며,
국가별 자료의 공개 시점에 따라 반영 내역은 상이할 수 있음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01. 중국

자료원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

종합 현황

● **'26.7월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식품」 통관불허 건수는 총 487건 ('26.9.2. 발표)**

- **국가별** : 에콰도르 162건, 미국 66건, 브라질 24건, 러시아 23건, 베네수엘라 22건 등
- **사유별** : 메타중아황산나트륨 기준 부적합 156건, 물품·증명서 불일치 57건, 라벨 부적합 52건, 관능검사 부적합 37건 등

● **'26.7월 중국 해관총서의 「수입화장품」 통관불허 건수는 총 35건 ('26.9.2. 발표)**

- **국가별** : 일본 11건, 스위스 10건, 독일 9건, 프랑스 3건, 스페인 1건, 한국 1건
- **사유별** : 라벨 부적합 31건, 요구된 증서·적합증명자료 미제출 3건, 관능검사 부적합 1건

한국산 관련 동향

● **'26.7월 한국산 수입식품 및 화장품 통관불허 내역**

한국산 수입식품 통관불허 상세내역(6건)

연번	상품명	중량(Kg)	통관불허 사유	반입지 해관
1	인스턴트 커피음료 (A제품)	1,132.8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문제	칭다오
2	인스턴트 커피음료 (B제품)	243	해외 식품 생산기업 등록 문제	칭다오
3	사발면 (A제품)	1,596	라벨 부적합	칭다오
4	사발면 (B제품)	6,006	라벨 부적합	칭다오
5	라면(멀티팩)	9,408	라벨 부적합	칭다오
6	볶음탕면	259.8	미승인 동물성 성분 함유	칭다오

한국산 화장품 통관불허 상세내역(1건)

연번	상품명	중량(Kg)	통관불허 사유	반입지 해관
1	알로에 토너(芦荟爽肤水)	60	라벨 부적합	칭다오

우리기업 유의사항

한국산 통관불허 6건 중 라벨 부적합이 3건 반복된 만큼 중국 수출 전 제품별 중문 라벨 표시사항을 점검하고, 라면류의 경우 육수분말·추출물·향미원료 등 복합원료에 포함된 동물성 성분의 중국 수입 허용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02. 미국

자료원 : 미국 식품의약국(FDA)

종합 현황

●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수입거부(Import Refusal) 동향 ('26.9.28. 기준)

- Import Refusal은 FDA의 최종 수입거부 결정으로, 거부 물품은 통지 후 90일 이내 FDA·CBP 감독하에 폐기하거나 미국 밖으로 반출해야 함
- '26.8월 미국 FDA의 수입거부는 총 3,480개 화물라인
- **국가별** : 스웨덴 1,000건, 인도 618건, 덴마크 203건, 중국 196건, 멕시코 188건, 한국 147건 등

한국산 관련 동향

● 월별 FDA 수입거부(Import Refusal) 화물라인 수 비교

월별 FDA 수입거부(Import Refusal) 화물라인 수 비교

구분	'26.7월	'26.8월	증감
전체 수입거부 화물라인	5,600건	3,480건	▾2,120건(-37.9%)
한국산 전체 수입거부*	270건	147건	▾123건(-45.6%)
한국산 식품 수입거부**	57건	6건	▾51건(-89.5%)

*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FDA 관할 제품 전체의 한국 관련 거부라인 건수
** 전체 건수 중 FDA 식품 관련 Industry Code 기준 거부라인 건수

'26.8월 한국산 식품 수입거부(Import Refusal) 상세내역(6건)

발생일	한국업체	상품명	중량(Kg)	거부기록	위반사유
8.4.	S사	Seaweed, Dried or Paste 건조/페이스트 해조류	ASW-0145164-9	2	FDA Charge 251 – POISONOUS 유해·유독성 물질 함유 우려
8.5.	A사	Anchovy 멸치	9NX-0007847-0	2	FDA Charge 249 – FILTHY 불결·부패·분해된 물질 또는 식용 부적합
8.13.	D사	Ginseng (Herbal & Botanical Teas) 인삼(허브·식물성 차류)	AEK-0969505-6	1	FDA Charge 3864 – NCONTACT 식이보충제 라벨에 중대한 이상사례 신고를 위한 미국 내 주소·전화번호 미표시
8.24.	G사	Pepper, Hot, Dried or Paste 건조/페이스트 고추	U47-2608728-9	1	FDA Charge 3600 – REFUSE EI 비위생적 조건에서 제조·가공·포장된 것으로 판단

우리기업 유의사항

미국 수출기업은 수산식품의 위생요건, 식이보충제의 표시사항 등 FDA 수입요건 준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03. EU

자료원 : 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

종합 현황

● **'26.7월 EU 식품·사료 신속경보시스템(RASFF)의 「수입식품·사료」 통관불허 (Border Rejection) 건수는 총 129건 ('26.9.28. 기준)**

■ **국가별** : 튀르키예 26건, 인도 13건, 나이지리아 12건, 중국 11건, 브라질 9건, 한국 2건 등

한국산 관련 동향

● **'26.7월 한국산 통관불허(Border Rejection) 사례 - 라면 2건**

항목	사례 ①	사례 ②
발생일	2026.7.8	2026.7.8
통보국	라트비아	라트비아
원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품목	Instant noodles	Instant noodles
카테고리	Prepared dishes and snacks	Prepared dishes and snacks
위해요인	Glycidyl esters	Glycidyl esters
Notification type	Border rejection	Border rejection
위험평가	Potentially serious	Potentially serious
기업명	비공개	비공개
브랜드	비공개	비공개
조치	국경반입 거부	국경반입 거부
이후 반송/폐기	정보없음	정보없음

우리기업 유의사항

라면류는 팜유 등 유지 원료에서 기인할 수 있는 글리시딜 에스터(Glycidyl esters)*가 EU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원료 및 완제품의 오염물질 기준 충족 여부를 제품별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 식물성 유지나 정제유를 정제하는 과정이나 지방과 염분이 많은 식품을 가열할 때 생성될 수 있는 오염물질

04. 일본

자료원: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종합 현황

● **'26.8월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의 「수입식품」 위반사례 건수는 총 46건 ('26.9.28. 기준)**

- **국가별** : 중국산 14건, 태국산 5건, 인도네시아산 4건, 미국 3건, 한국 2건 등
- **사유별** : 대장균군·세균수 등 미생물 기준·규격 부적합 18건, 잔류농약 8건, 지정외 첨가물 관련 5건 등

한국산 관련 동향

● **'26.8월 한국산 식품 위반사례 - 2건**

사례	카다이프 초콜릿 떡	고구마 떡 냉동식품
공표일	2026.8.10.	2026.8.19.
생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품명	CRISPY KADAYIF CHOCOLATE RICE CAKE	SWEET POTATO RICE CAKE
품목분류	기타 양과자(その他の洋菓子)	가열 후 섭취 냉동식품(동결 직전 미가열)
담당 검역소	시모노세키(下関) 검역소	시모노세키(下関) 검역소
위반법령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13조 제2항
위반내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초과	미생물 기준 부적합
검출내용	폴리소르베이트 60 0.07 g/kg (폴리소르베이트 80 환산)	대장균(E. coli) 양성
검사유형	자주검사(自主検査)	모니터링검사
조치	폐기·반송 지시	폐기·반송 지시

우리기업 유의사항

냉동식품의 미생물 기준 및 복합원재료의 첨가물 사용기준 사전확인이 필요함

05. 대만

자료원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

종합 현황

● **'26.8월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 「수입식품」 국경검사 부적합 건수는 총 52건 ('26.9.28. 기준)**

- **국가별** : 중국산 18건, 일본산 9건, 베트남산 7건, 인도네시아산 4건 등
- **사유별** : 잔류농약 19건, 식품용 기구·용기 용출시험* 10건, 중금속 8건 등

*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 등에서 유해한 물질이 식품으로 녹아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시험

한국산 관련 동향

- '26.8월 부적합 사례는 없음
- 한국산의 직전 부적합은 '26.5월 영유아 쌀과자 카드뮴 초과(0.047mg/kg, 기준 0.040mg/kg) 건으로, 8월에도 일본산 동일 세번의 영유아 쌀과자가 같은 카드뮴 기준초과로 적발

항목	한국 거부사례	유사 거부사례(일본)
공표일	2026.5.12.	2026.8.11.
제품명	IVENET BEBE STICK RICE SNACK_SWEET POTATO / 영유아 고구마 쌀과자	SNACK / 영유아 쌀과자
세번	1905.90.30.00-9	1905.90.30.00-9
부적합 사유	카드뮴 기준초과	카드뮴 기준초과
검출값	0.047 mg/kg	0.067 mg/kg
대만 기준	0.040 mg/kg 이하	0.040 mg/kg 이하
수량·중량	130 CTN / 23.40kg	48개 / 1.68kg
검사접수일	2026.4.21.	2026.7.21
관련 법령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7조
조치	반송 또는 폐기	반송 또는 폐기

우리기업 유의사항

일본산 해조류에서는 8월 중 무기비소 관련 부적합이 반복됐으며, 중국산 식품용 기구·용기의 용출시험 부적합도 다수 확인되므로 대만 수출기업은 선적 전 각 수출물품의 해당 기준을 별도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

06. 호주

자료원 : 호주 농림수산부(DAFF)

종합 현황

● **'26.7월 호주 농림수산부(DAFF)의 「수입식품」 부적합 건수는 총 22건 ('26.9.28. 기준)**

■ **국가별** : 인도 4건, 필리핀 4건, 중국 4건, 베트남 2건, 스리랑카 2건, 한국 1건 등

한국산 관련 동향

최근 한국산 부적합 사례

사례	팽이버섯	팽이버섯	냉동 조리 피조개살
공표일	2026.4.24.	2026.5.15.	2026.7.21.
생산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
참조기준	수입식품관리법§3(2)(a)(i) (병원성 미생물 검출)	수입식품관리법§3(2)(a)(i) (병원성 미생물 검출)	FSC 1.6.1 (미생물 기준 위반)
부적합 내용	리스테리아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	리스테리아 (Listeria monocytogenes) 검출	대장균(E. coli) 허용기준 초과
검사결과	Detected/125g	Detected/125g	7.5 MPN/g
식품분류	Risk	Risk	Risk

6월 참고사례

사례	팽이버섯	고추 분말(chili powder)	냉동 조리 새우 커틀릿
공표일	2026.6.9. / 6.10. / 6.23. / 6.25.	2026.6.12.	2026.6.16.
생산국	중국	인도	베트남
참조기준	수입식품관리법§3(2)(a)(i) (병원성 미생물 검출)	FSC 1.6.1 (미생물 기준 위반)	FSC 1.4.2 (농약·동물용의약품 잔류기준 위반)
부적합 내용	리스테리아 (Listeria monocytogenes) 반복 검출	살모넬라(Salmonella) 검출	동물용 항생제 엔로플록사신 (Enrofloxacin) 검출 (해당 식품에 허용되지 않음)
검사결과	Detected/125g	Detected/125g	0.073 mg/kg
식품분류	Risk	Risk	Risk

※ FSC(Food Standards Code) : 호주·뉴질랜드의 식품 관련 기준을 정한 식품기준코드로, 미생물·농약잔류·식품첨가물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

우리기업 유의사항

팽이버섯처럼 동일 해외 생산자의 반복 부적합은 검사강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산·농산식품 업체는 원료 단계의 잔류물질 관리와 생산환경의 미생물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함